

◎항공기상청공고 제2025-3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항공기상 수요 대응 및 예보·특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한 직급(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1일에서 2028년 1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항공기상예보·특보 대외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상향한 직급(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9일에서 2028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